

<참 조>

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

제출연월일 : 2006. 1

제 출 자 : 경기도지사

□ 제정이유

-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질 처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
- 수질분야의 환경공영제 처럼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,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·군수를 통하여 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재원은 도비,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함(안 제4조)
- 다. 도지사는 매년마다 시·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, 악취 방지시설 설치·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도지사는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, 지원기준 등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고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·군수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·종료하였거나 변경시 변경 내용 등을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(안 제8조)
- 사.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업무를 위임 하고, 지도·감독을 하도록 함(안 제9조)

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악취물질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라 함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.
2. “악취배출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.
3. “악취방지시설”이라 함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) ①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인 사업장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
2.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
3. 그밖에 도지사가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별표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설치·개선비용 보조기준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시장·군수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.

제4조(재원)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비 및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및 소요과약)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·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·개선보조금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신청) ①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고 「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시장·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·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보조금의 신청·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설치자의 신고의무)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·종료·폐지하였을 때
2. 시공업체의 변경, 사업비의 변경 등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

제8조(보조금의 반환)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
2.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3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
4.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,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·군수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